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기법

02. 설명회·공청회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1. 설명회 · 공청회 운영현황

1)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 공청회 운영

설명회는 말 그대로 사업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주민에게 알기쉽게 설명하고 주민으로부터 질문이나 의견을 받는 자리다.

철도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개요

- 위치: 충청북도 OO군-경상북도 OO시
 - 사업의 종류: 복선전철 계획
 -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
 - 승인기관: 국토해양부
 - 사업기간: 2014~2020년
 - 사업의 내용: 연장=148km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 관련 지자체별로 2014년 09월 17일과 18일에 4군데에서 개최

2) 주민의견 및 사업자의 대응

4개 시 · 군에서의 주민설명회의 의견을 크게 분류하면 철도 노선 계획과 편입용지·농지에 대한 보상 문제, 소음·경관 등의 환경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철도 노선 계획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지번 등)과 정류장이 설치되는 위치, 복선과 단선 구간의 경유지 등이 있다. 편입용지와 농지 보상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노선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구체적인 지역과 농경지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인해 공사 시 농사를 못 짓게 될 경우의 피해 보상, 농사를 짓지 못하는 잔여지에 대한 처리 대책, 주거지 전면 방음벽 설치에 대한 지가 하락에 대한 대책 등이 제기되었다.

환경적 문제는 주거지와 인접하여 철도가 자리 잡으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방음벽 설치에 따른 경관 영향, 철도 노선의 성토로 인한 영향과 이로 인한 교량 요구사항 등이 제기 되었다.

사업자는 주민의 편입용지와 농지 분할, 농사 방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현재까지 노선이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도 소음 영향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구간과 교량 설치 요구에 대한 불가능한 사유, 이동로 단절에 따른 통로박스 설치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철도와 인접한 주거지에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주민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소음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공감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특이사항

주민설명회는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의 특별한 갈등 없이 진행되었으며, 주민의 개별적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이후에 추가로 해당 주민에게 설명하는 등 사업에 따른 의문사항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로나 철도는 계획 추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주민과 노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은 철도 개발 및 경유하는 노선에 대하여 비교적 많은 정보를 습득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과정인 실시설계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개발과 이에 대한 환경영향을 설명하기보다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음 등에 대한 환경기준의 만족 여부를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기보다는 발생소음도에 따른 인간이 느끼는 영향 정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공청회 진행 방법

공청회는 설명회와 달리 전문가들이 하는 토론회이며, 주민입장의 전문가가 질문하고 사업자입장의 전문가가 답변한다.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공청회의 개요

- 위치: 경기도 하남시
- 사업의 종류: 항만의 건설(준설 사업)
- 사업시행자: OO에너지 서비스 주식회사
- 공청회 주재자: OO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개최일시: 2013년 7월 18일(목)
- 개최장소: OO 국민체육센터
- 참석인원: 약 500여 명
- 의견진술자: OOO 집행위원장, OO 교육공동체 대표, OO 지구 연합회 총무, OOO 자치위원장, 입주예정자 2인
- 사업자 측 답변자: 사업자 부장 2인, 팀장1인, 평가대행회사 상무 1인, OO대학교 교수

(2) 의견진술내용 및 사업자 측 답변

의견진술내용	답변 및 조치
○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환경문제가 대두 되었고 충분한 답변이 있었음. 하루 빨리 입주예정자들을 위해서라도 조기착공하여 주기 바람	-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는 시설이라면 왜 기존 풍산동에서 강동구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했는지	○ 부지이전에 대한 내용은 국토부와 내가 이해하는 부분으로 사업자가 답변하기엔 한계가 있음 ○ 환경관련 염려사항에 대해서는 배출량을 실시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픈 옥외 전광판 설치 등으로 지역주민이 감시하는 시스템을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부지배치계획을 보면 주요 시설들이 주거지역	○ 공사 시에는 항타가 아닌 매입공법으로 소음영향을

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소음과 냉각탑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며, 맹꽁이의 경우 운영 시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최소화할 계획이며, 운영 시 주요 소음유발시설은 건물 내에 배치할 예정
○ 평가서상 온실가스 발생량이 89만 6,404톤이 발생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저감 방안으로 LNG연료사용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저감방안임	○ 이산화탄소는 개인사업자들이 저감하기 어려운부분이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접근해야할 내용으로 평가작성 시 실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음
○ 환경저감의 가장기본적인 부분이 용량축소이며 사업의 취지에 맞게 열공급 위주로 용량을 축소하여 주고 시설을 지하화하여 주기 바람	○ 지하화할 경우 2017년 하반기에나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지 또한 1.5배 이상의 부지가 필요함. 지하화한다 하여도 주요 시설 굴뚝과 냉각탑은 지상에 위치하게 됨

(3) 특이사항

주재자는 공청회의 목적이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평가서 본안을 잘 만드는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입지변경이나 발전용량에 대해서 사업자가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다.

승인기관과 중앙정부의 협의로 입지가 변경되었다면 공청회 답변자는 사업자만이 아니라 승인기관이나 중앙정부 관계자도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 측 답변자도 부장급이므로 사업계획의 대안검토, 입지검토 등의 계획변경에 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답변할 수 없으며, 사업자 측 입장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게 된다. 의견진술자의 의견이 타당하더라도 사업자 측의 입장을 변경하여 의견진술자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의견진술자와 사업자의 의견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설명회든 공청회든 답변은 사업변경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책임자가 전면에서 나서야 할 것이며, 특히 공청회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이나 협의기관의 담당자가 나와서 의견을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설명회 · 공청회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설명회 및 공청회의 운영주체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법령에서는 설명회와 공청회의 목적이나 개념의 차이가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설명회도 공청회도 평가서 작성 주체가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설명회는 의무사항이고 공청회는 주민 30명 이상이 요구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선택사항이라는 점, 설명회는 주민만이 참석 가능하고 공청회는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가 있어서 주민 이외에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석가능하다는 점이다.

공청회란 폭넓게 듣는 자리라는 의미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듣는 것인지, 운영 주체에 대한 것이다. 평가서 초안이 작성된 이후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과 사업자는 대화하게 되어 있다. 주민은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자는 반영 여부와 대책을 마련한다. 그런데 주민이 공청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설명회나 주민의견서를 통해 사업자에게 요구를 하더라도 사업자의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자와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공청회를 요청하게 된다. 그런데 공청회도 사업자가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 과연 설명회와 공청회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보면 설명회는 사업자가 개최하는 것이며 공청회는 승인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듣는 자리로 설명회와 공청회의 목적 및 위상을 분명히 다르게 하고 있다.

한편 공청회의 운영 현황을 돌이켜보면 공청회는 복수의 의견진술자가 의견을 진술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운영현황은 주민 측이 추천한 전문가와 사업자가 추천한 전문가가 찬반토론회를 하듯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양측의 의견을 누가 듣는가 하는 점이다. 현행 제도는 사업자 측의 논리와 주민 측의 논리를 사업자가 듣는 자리로 운영되고 있다.

공청회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 양쪽의 입장을 사업자가 듣는 것이 아니라 협의기관 또는 검토기관, 승인기관이 듣고 인허가나 협의의견 작성에 반영하도록 공청회의 목적을 다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공청회는 다양한 입장의 주민의견을 주민 또는 전문가를 통하여 듣고 의사결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그런데 실제 운영상에서는 공청회도 설명회도 사업자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규정되어 있다.

설명회가 사업자가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 공청회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검토기관의 총괄위원은 참관하여 사업자와 주민 양쪽의 주장을 듣고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 공청회는 사업자가 아닌 레프리가 들어야 한다. 여기서 레프리는 승인기관 또는 협의기관이 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상 승인기관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협의기관이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즉, 사업자 측의 의견과 주민 측의 의견을 듣고서 협의기관의 협의의견 작성에 참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보완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사한 제도인 환경영향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 역시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 판단하는 것이기에 공청회 역시 협의기관이 듣는 것이 좋다. KEI가 공청회를 주관해달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2) 개선방향

공청회는 주민 측과 사업자 측의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사업자와 주민(혹은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의 공방을 협의기관, 검토기관 또는 승인기관이 듣는 자리로 개정되어야 한다.

향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공청회를 환경부가 주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이며,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승인기관이 공청회를 주최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만일 두 기관에서 주관하기 어렵다면 사업자가 주관하되 승인기관, 협의기관에서 반드시 참석하게 하는 방안이 차선책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공청회 운영방식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의 공청회는 주민 측이 추천한 의견진술인이 먼저 진술하고 사업자 측 또는 사업자 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형식이 많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의하기보다는 다양한 이슈를 나열하고 서로의 주장만 펼치는 비효율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청회 과정에서 서로의 견해차이가 정리, 조정되는 경우도 별로 없다고 한다. 결국 서로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과정이 연속되며, 환경영향이나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내용이 아닌 공청회 운영방식의 문제나 서로의 언행을 문제 삼아 공청회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 공청회가 갈등 증폭의 장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주재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공청회 운영이나 내용의 조정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민 간의 언쟁 또는 주민과 사업자의 언쟁으로 주재자가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재자의 진행이 편파적 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은 공청회 녹취록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주재자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주민 측에서 본안 작성 후 추가 설명회를 요구하면, 주재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초안 때만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다. 초안단계에서는 반드시 하게 되어있으나 본안 때 설명회를 개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사업자와 주민이 상호 신뢰하고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안에 대한 설명회를 협의할 수도 있는데 이를 주재자가 무산시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공청회 개선방안을 찾아보기 위하여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공청회 운영을 살펴보는 것도 참고가 된다. 1990년대의 일본 도쿄 도의 공청회는 주민 또는 주민이 추천하는 의견진술자가 의견을 진술하기만 하고 종료되었다. 필자가 도쿄 도의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니 공청회는 말 그대로 듣는 자리이므로 듣기만 하고 끝난다고 답변하였다. 공청회를 듣는 자리로 이해하였지만 왜 듣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이다.

이에 비해 가와사키시의 공청회 조례는 매우 특색이 있다. 의견진술인과 사업자가 서로 2~3번씩 의견을 반복하게 하여 서로의 견해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이 과정을 승인기관인 가와사키 시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은 공청회에서의 각각의 주장에 대하여 가와사키 시가 입장을 표명한다는 점이다. 사업자와 주민의 입장에 대해서 승인기관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판단된다.

참고로 가와사키 시의 공청회 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가와사키 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규정

- 목적
 - 승인기관인 가와사키 시장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함
- 공술방식(3round 방식)
 - 1차 공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개요 설명
공술인이 의견 제시
 - 2차 공술: 사업자는 1차 공술에 대한 견해 제시
공술인은 사업자의 2차 공술에 대한 의견 제시
 - 3차 공술: 사업자는 공술인의 2차 공술에 대한 견해 제시
공술인은 사업자에 견해에 대한 총괄 의견 제시
- 방청인의 준수사항: 박수, 빠라, 방해 등을 하지 말 것

<참고> 가와사키 시 도시계획 공청회 규정

- 시장의 견해
 - 공청회 발언 및 공술의견에 대한 시의 견해를 작성하여 공술인에게 통지한다.

(2) 개선방향

공청회 운영방식에 대한 운영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며,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주민 측의 진술과 사업자의 진술이 이슈별로 최소한 2차례 이상 반복되어 양측의 입장 차이가 명확해지도록 하다.

둘째, 공청회에서 주민 측 및 사업자 측 각각의 주장에 대한 협의기관(또는 검토기관이나 승인기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공청회는 레프리가 들어야 하며 레프리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셋째, 공청회에서 다루야 할 내용과 다루지 못하는 내용, 지켜야 할 내용과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한 사전합의를 공청회 참석자에게 받도록 하여야 한다. 공청회가 본질과 다른 문제로 파행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여야 한다.

3) 설명회의 답변자

(1) 현황 및 문제점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는 주민의 질문에 대하여 평가대행업체에서 답변하는 비중이 제일 높다.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 환경공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전문가 집단인 평가대행업체에서 답변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안의 검토 등 사업 예산과 관련 된 부분은 평가대행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답변하는 것이 당연하다. 평가대행업체에서는 예산의 증가가 수반되는 계획대안의 검토, 보상, 이주대책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명회에서 주민의 요청에 따라 계획대안이나 입지대안을 검토한다고 약속할 수 있는 주체가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업자 측에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부장, 과장급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원이 참석하더라도 계획변경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즉, 설명회에서 주민의 요청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사업자나 평가대행자는 사업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자 측에서 바라본 설명회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설득이 아닌 협의를 위해서는 예산변경 사업변경에 대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설명회에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사업자 측에서도 의사결정권을 가진 직급의 사람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로 사장이나 오너 등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가 설명회에 직접 나와서 답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2) 개선방향

설명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직접 주민 앞에서 답변하여야 한다. 그래야 일방적인 설득이 아닌 주민과 협의할 수 있고, 주민도 설명회에 임하는 사업자의 자세를 인정하면서 서로에게 불필요한 오해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설명회의 설명 및 답변은 사업자가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답변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설명회에는 사업자 측의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설명회 정보의 난이도

(1) 현황 및 문제점

사업자 입장에서 설명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주민참여의 목적 중의 하나인 좋은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민으로부터 다양한 지역환경정보를 수집하여 평가서 본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다.

한편 주민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나 평가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설명회에서 "이미 평가서가 환경부에 접수되었는데 이제와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어떡하느냐"라고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있었다. 초안과 본안의 차이를 이해한다면 해결될 문제였지만, 그렇다고 일반 주민에게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탓할 수는 없다. 설명회 시작 전에 간단한 평가제도의 소개가 있었다면 설명회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는 높아졌을 것이다.

그것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평가서에 대해서 주민이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 주민은 물론이고 환경단체 관계자도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주민이 체감하는 환경적인 우려를 정확한 언어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다고도 한다.

특히 평가서의 내용 중에서 생활환경과 관련한 수치나 기준이 가지는 의미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어렵다고 한다. 기준치를 넘는다든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예를 들어 소음의 3웨클의 차이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민이 정확히 이해하기는 힘들다고 한다.

(2) 개선방향

주민이나 환경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평가서의 이해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다. 주민이 평가서의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고 설명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평소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렇다면 지역에 개발사업이 계획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고 공람되고 설명회가 개최되는 상황

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도록 환경부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는 환경영향평가협회에 주민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것도 주민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설명회에서 평가서 초안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거나 주민 입장에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면 좋은지에 대해 조언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설명회 등 주민참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코디네이터, 환경영향평가 해설사 등의 지원자가 주민의 언어와 전문가의 언어를 통역해주는 것도 검토해볼 만한 일이다.

5)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무산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법에서는 주민 등의 방해로 인하여 설명회나 공청회가 무산되면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 입장에서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무사히 마치면 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더는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한, 설명회나 공청회가 무산되면 언론의 조명을 받을 수 있기도 하기에 주민입장에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설명회, 공청회가 무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하는 사업자도 있다고 한다. 설명회나 공청회가 주민 등의 방해로 무산되면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주민방해로 무산되는 것은 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든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설명회, 공청회의 운영이 어렵다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민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시에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도 시행령에서도 불가피하면, 설명회나 공청회는 생략한 것으로 인정하나, 그에 준하는 의견수렴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선례가 없는 실정이다.

(2) 개선방향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무산되었을 경우 법에서 규정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한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여야 함”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법과 시행령에서 말하는 것은 의견수렴의 중지나 생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아닌 다른 방법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화상 공청회의 실시; TV나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을 활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TV 토론회나 국회의원 선거 토론회와 같이 의견진술인을 초청하여 공청회를 실시한다면 주민 등의 방해로 인하여 공청회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찬반 토론이 충분히 진행된 후에 시청자로부터 전화 메일 등의 온라인으로 추가의견을 받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공청회 주관기관의 변경; 사업자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대한 불신, 또는 불만으로 공청회가 무산되면 협의기관이나 승인기관이 주관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협의기관보다도 승인기관이 주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신뢰관계의 유지이다.

셋째, 사회조사 방법론 활용; 화상공청회나 승인기관 주관의 공청회도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접 이해관계자를 찾아가서 의견을 듣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주민대표자 간담회, 포커스그룹

인터뷰나 참여관찰방법, 설문조사 등의 사회조사방법을 활용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 문헌>

- 없음